

# 부정 출석 행위에 대한 공고문

우리 대학은 공정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iMuniz 전자출결을 도입하고, 강의실 내 비콘(Beacon)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엄정한 출결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최근 일부 수업에서 타인의 출석을 대신 처리하거나, 강의실 외부에서 전자출결을 시도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었으며, 진료확인서 등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위조·허위 제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교과목을 실격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오니, 모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부정 출석 행위의 주요 유형

- 본인이 아닌 타인의 스마트폰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대리 출석 처리하는 행위
- 실제 출석하지 않고 위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출결을 시도하는 행위
- 출석인정 증빙서류(진료확인서 등)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유를 제출하는 행위

## 2. 관련 규정 및 법적 근거

- 「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시행세칙」 제23조의2(출석인정), 「학업성적처리 내규」 제2조(성적평가)에 따라, 부정 출석은 학업 성실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학사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.

- | 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대리 출석 등 부정 출석 1회당 결석 3회로 처리</li><li>-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·변조 적발 시 해당 교과목은 실격 처리</li></ul> |
|--|

-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·조작한 경우, 「형법」 제231조(사문서위조 등)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#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